

변호사 나재호 · 백승찬 법률사무소

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95 (2층) / 전화 (062)224-7749/ FAX 224-7747

문서번호	2023NJHBSC0508-1
시행일자	2023. 5. 8.
경 유	
수 신	광주광역시 서구청
참 조	
제 목	자문의뢰에 대한 의견서

우리 법률사무소는 귀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귀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자문의뢰에 대한 우리 사무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개진하오니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참고바랍니다.

다 음

1. 자문 요지

가. 자문 배경

서구에서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주차장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(지목변경신청)에 근거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부합하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하나, 과거 조성이 완료된 일부 주차장의 경우 행정착오 등으로 시설물의 준공이 완료된 후 지목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인지하고 지목변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(ex, 당초 ‘전’에서 주차장으로

변경)

나. 질의사항

주차장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차장은 불법시설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

2.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

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60일 이내에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고, 사후적으로 그 지목변경 절차를 거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시설물을 불법 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

이상 귀 서구청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. 위 문의에 대한 답변은 귀 서구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법원이 달리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

5

변호사 나 재 호

변호사 백 승 찬



법무법인 민주로

광주 동구 동명로 107, 금강빌딩 2층 / ☎ (062) 225-3342, 팩스 : (062) 225-3343

문 서 번 호 : 2023- 호

시 행 일 자 : 2023. 5. .

수 신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
참 조 : 교통지도과 정상준

제 목 : 지목변경 미이행시 해당 시설물의 불법여부

1. 귀청의 무궁한 업무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귀청이 법무법인 민주로에 자문 의뢰한 지목변경 미이행시 해당 시설물의 불법여부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.

첨 부 : 지목변경 미이행시 자문 1부 -끝-

[첨부]

지목변경 미이행시 해당 시설물의 불법여부

1. 질의요지

지목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주차장이 불법 시설물인지

2. 자문의견

공강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나 관련 사업자가 공간 정보를 수집, 관리, 공개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공하는 법률로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시설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.

2023. 5. 8.

법무법인 민 주 로

담당변호사 김 덕 은

